

## 2025-26 학년도 연례 FERPA 통지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FERPA)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생 교육 기록 및 이런 기록에 담긴 모든 개인 식별 정보(PII)에 대한 특정한 권리를 제공하는 연방법입니다. 18세 이상의 학생(유자격 학생이라고도 함)의 경우 권리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18세 이하의 학생의 경우 권리는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FERPA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 1. 교육 기록을 45일 이내에 열람하고 검토할 권리.

교육 기록을 원하시는 경우 학교장에게 서면 요청서(학생 교육 기록 요청 양식은 [온라인에](#))를 제출하십시오. 귀하의 신분이 확인되고 요청한 기록의 수신이 승인되면, NYCPS에서는 요청하신 기록 사본을 제공하거나 여러분이 직접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할 것입니다.

### 2. 교육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FERPA의 학생 사생활 보호 권리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권리.

학교장에게 서면으로(이메일도 가능) 요청서를 제출하되, 여기에 변경을 원하는 기록은 어떤 것인지, 현재 해당 정보가 부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믿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변경을 원하는지 등의 내용을 적으십시오. 만약 NYCPS에서 요청하신 교육 기록 정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공청회 요청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이 귀하께 발송됩니다.

### 3. 학생의 교육 기록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서면 동의를 요구할 권리.

그러나 일부의 경우, FERPA는 학부모 동의 없이 공개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의 PII가 동의 없이 공개될 수 있는 경우의 예:

- 정보에 타당한 교육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 교직원에게.
- 학생이 다른 학교, 학군 또는 교육 기관에 등록하거나 전학할 때.
- 감사 또는 평가를 위해 권한을 가진 정부 관계자들에게.
- 학생들의 재정 보조 신청과 관련하여.
- NYCPS를 위해 또는 그 대신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 18세 이상의 학생이 미국 국세청 세금과 관련하여 그들의 학부모의 피부양자일 경우 그들의 학부모에게.
- 사법 명령 또는 합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을 준수하기 위해.
- 보건 또는 안전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담당자를 적절히 배치하기 위해.
- NYCPS가 특정 유형의 PII를 "디렉토리 정보"로 지정할 때, NYCPS는 디렉토리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디렉토리 정보로 지정될 수 있는 유형과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귀하에게는 학생의 PII가 디렉토리 정보로 공개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4. NYCPS가 FERPA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미국 연방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다음 주소로 이의를 제출하십시오:

Student Privacy Policy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8520  
또는 이메일 [FERPA.Complaints@ed.gov](mailto:FERPA.Complaints@ed.gov)

**5. FERPA에 의한 귀하의 권리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